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(채수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채수지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태수, 남궁역, 신복자,  
유정희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 
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 
최유희, 황철규 의원(20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동 조례 제14조제3항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,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일 제보 내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산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- 그러나 상위법령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'개별 공익침해행위' 단위로 명시하고 있어, 동 조례와 상위 법령과의 규정 체계가 상이함.
- 따라서 동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'개별 공익침해행위'로 명확히 규정하여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산정 · 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'개별 공익침해행위'로 규정하여 운영과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함(안 제14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‘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 또한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.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보상금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와 산정된 보상금이 천원 단위 미 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p>	<p>제14조(보상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 또한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 은 지급하지 않는다.</p>
<p>④ ~ ⑧ (생략)</p>	<p>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산정·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, 조례 제14조(보상금)제3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'개별 공익침해행위'로 규정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[kjh0816@seoul.go.kr](mailto:kjh0816@seoul.go.kr)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